

 <p>Up! 2% Down! 2% 다가가는 나의 꿈</p>	가 정 통 신 문	 <p>http://imhak.icems.kr</p>
---	-----------	--

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새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의 개별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하고자 학교구성원의 1차 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학교규칙 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차 의견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규정 2차 설문조사 결과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학교장 승인의 절차를 거쳐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생활규정 개정 2차 설문조사 >

현행규정 제3조(두발) 염색, 브릿지, 코팅, 퍼머넌트 등을 금한다. 단, 곱슬머리를 펴기 위한 스트레이트 퍼머넌트는 허용한다.

1안	염색을 제외한 두발의 길이와 모양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안	과도한 펴는 허용하지 않으며, 염색은 브라운 및 블랙의 어두운 색으로 제한한다.
3안	<규정삭제> - 두발자유화

현행규정 제4조(용모) ①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화장을 하지 않는다.

1안	색조화장을 제외한 피부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은 허용한다.
2안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과도한 화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3안	<규정삭제> - 화장자유화

현행규정 제5조(복장) ④ 모든 사복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1안	상의 조끼, 하의 교복을 착용한 후 학교에서 지정한 외투(패딩, 잠바, 후드집업) 착용을 허용한다.
2안	상의 조끼, 하의 교복을 착용한 후 기타 의류를 착용 할 수 있다. (2안으로 결정됨)

- 2차 의견조사시기·방법 : 2019년 12월 19일(목) ~ 12월 24일(화) 기한 내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 기타 : 학부모·학생·교원의 의견은 같은 비율로 반영되며, 전체비율의 다수가 동의한 항목으로 규정개정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입학교육가족 2차 의견조사 결과								
구분	제3조			제4조 1항			제5조 4항	
	1안	2안	3안	1안	2안	3안	1안	2안
찬성 인원	208	208	367	197	243	343	275	508
비율	30.48	23.48	48.67	24.02	27.84	50.78	35.19	67.45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V. 학생 생활 규정 제4장 용의복장 규정 제3조(두발) 학생의 두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공통 1. 염색, 브릿지, 코팅, 퍼머넌트 등을 금한다. 단, 곱슬머리를 펴기 위한 스트레이트 퍼머넌트는 허용한다.</p> <p>제4조(용모) ①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화장을 하지 않는다.</p> <p>제5조(용의복장) 학생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④ 모든 사복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p> <p>⑤ 동절기에는 교복착용 후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p>	<p>V. 학생 생활 규정 제4장 용의복장 규정 제3조(두발) 학생의 두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공통 1. <삭제></p> <p>제4조(용모) ① <삭제></p> <p>제5조(용의복장) 학생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④ <삭제></p> <p>⑤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상의 조끼, 하의 교복을 착용한 후 기타 의류를 착용할 수 있다.</p>	<p><삭제> <삭제> <삭제> <변경></p>

2020.3.23.

임 학 중 학 교 장